

도시건설위원회
소관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교통행정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1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5년 10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무단방치자전거의 재활용 및 기증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무단방치 자전거의 재활용(안 제9조의2) 규정을 신설하여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제2항

제11조(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)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 할 수 있다.

1. 매각. 이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(隨意契約)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,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.
2. 기증
3.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
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- 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1)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25. 8. 7.(목) ~ 2025. 8. 27.(수) (20일간)
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
3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4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5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아동영향평가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무단방치 자전거의 재활용)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수거된 방치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분해·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을 통하여 재생자전거로 생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는 저소득가구, 복지시설, 교육기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9조의2(무단방치 자전거의 재활용)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수거된 방치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분해·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을 통하여 재생자전거로 생산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는 저소득가구, 복지시설, 교육 기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(안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경우

4. 작성자

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 이정희